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57916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피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16.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비투비(B2B) 할인계약에 기한, 원고 주식회사 A는 254,860,253원, 원고 B는 59,49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구두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C'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이에프씨 (이하 '이에프씨'라 한다)는 '에스콰이아'라는 상표로 구두, 핸드백, 가방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이에프씨는 2011. 8. 30. 피고와 사이에 125억 원을 한도로, 이에프씨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이른바 판매기업)가 이에프씨에 대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채권자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을 위한 약정(이른바 B2B 대출,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2조 (용어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

- 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 6.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 대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 대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출을 말합니다.
- 2) 원고 B는 2011. 12. 5. 이에프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단보대출의 이용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갖추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본약정에 기초한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및 3억 원을 한도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의 여신거래약정과 이에 부속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3) 이후 원고 회사는 2013. 11. 19. 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본약정에 기초한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및 3,000만 원을 한도로 '상환청 구권이 있는 방식'의 여신거래약정과 이에 부속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

출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서

본인(원고들, 이하 같다)은 이에프씨(이하 "구매기업")에 대한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금의 수금과 관련하여 은행(피고, 이하 같다)과 외상매출채권전자결제제도 이용 약정에 있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이하 생략)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상환방법	건별대출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추가약정서(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용)

제1조 거래조건

상환청구권	◎ 상환청구권 <u>있는</u> 방식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본인이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
	권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출
	금 상환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 상환청구권 <u>없는</u> 방식
	은행이 구매기업의 상환능력 악화로 본인이 은행에 양도
	한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제10조 담보가치의 유지 및 통지의무

① 본인은 물품의 하자, 불량 등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은행에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으

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매출채권이 피담보채무에 부족하는 경우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체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원고들의 이에프씨에 대한 납품 등 및 피고의 상환청구권 행사

- 1) 원고들은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에프씨에 신발제품 등을 납품하였고, 이에 이에프씨는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회사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254,860,253원, 원고 B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9,491,877원의 각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다.
-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하여, 원고 회사는 254,860,253원을, 원고 B는 59,491,877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3) 그런데 이에프씨는 위 각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이에프씨는 201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들의 이에프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기초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채권매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처분문서인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서(을 제5, 8호증), 여신거래약정서(을 제6, 9호증), 추가약정서(을 제7, 10호증)에 더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기본약정의 객관적인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은 판매기업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구매기업인 이에프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권액 상당을 대출받되, 이에프씨가 대출만기일까지 피고에게 그 외상매출채권을 전액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미결제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청구권을 유보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일종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외담대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이라고 정의하면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여신거래약정서의 제1조 표 중 '상환방법'란에 "건별대출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원 상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추가약정서 제1조 표 중 '상환청구란'에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본인이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 결제대금을 최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청구를 하기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1항에도 채무자인 원고들의 이에프씨에 대한외상매출채권의 담보가치 유지의무 및 담보가치 부족 시 대체담보·추가담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더욱 분명하다.

나)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이 채권매매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에프씨가 원고들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처분문서상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차단함으로써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원고들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이에프씨의 변제자력에 대한 위험부담을 제3자인 피고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각 추가약정서 제1조 표에는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에 관한 거래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이 채권매매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채권을 매도한 이후에도 매매금액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은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위 주장 및 그 밖에 비정형적 신탁형 자산유동화 또는 복합금융상품이라는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 1) 상환청구권 조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가) 약관법 제3조 위반 여부
- (1) 원고들은, 상환청구권 조항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충분한 명시·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가 약관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환청 구권 조항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신청을 하려면 중요정보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그림 1과 같은 안내문이 표시되는 사실, 그 안내문에 있는 세 군데의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눌러 체크표시를 한 다음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별지 그림 2와 같은 별도의 전자 서명 작성 창이 표시되는 사실, 위 전자 서명 작성 창에 이용신청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 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체크박스에 체크표시 등을 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내문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자가 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상환청구권 조항이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프씨가 채권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대출금을 상환청구하게 됨을 명시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확인한후 '동의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전자서명을 함에 있어서도다시 한 번 상환청구권 적용 및 대출금 상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들도 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상환청구권 조항에 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나아가, 전자금융거래의 속성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거래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점, 경험칙상 대출채무자가 대출만기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과 그 명시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무자가 되어 피고의 상환청구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상환청구권 조항은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시한 것만으로 충분하고,나아가 사업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 (5)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약관법 제7조 제2호 위반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상환청구권 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인 원고들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상환청구권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서 약 관법 제7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이에프씨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이 해당 거래에 관하여 제3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여 야 하는 위험은 이에프씨가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실화 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위 ①항의 원고들이 이에프씨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과 같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고, 원고들이 상환청구권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다.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그 성질상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들이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래 원고가 부담하는 위험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그를 거래상대방으로 선택한 거래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계약법의 대원칙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이에프씨의 신용·자력 및 위험 등을 파악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위반여부

원고들은 상환청구권 조항이 고객인 원고들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 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을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프씨의 변제자력에 관한 위험은 원래부터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인 점, ③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인의신용과 그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가 우선적으로 거래처인 이에프씨의 신용에 근거하여 영세업자인 원고들로부터 외상매출채권 이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출을 해준 후 만일 이에프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비로소 원고들에게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이 원고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에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본인(원고들)이 즉시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원고들과 같은 영세업체들이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지급기일에 변제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상환청구권 조항에 어떠한 불공 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불공정성 등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약관을 수정해석하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 정의 상환청구권 행사 방법 규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축소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이에프씨가 만기일에 외 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 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하는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 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 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자본시 장법에 정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위 원칙과 의무를 위반하 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대출약정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금융 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원고들은 피고가 담보권행사를 통하여 이에프씨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족을 얻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투자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에프씨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이에프씨에게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에 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에프씨가 2011년경, 2012. 12. 31., 2013. 10. 16., 또는 2013. 12. 31. 이미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지급·결제할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이에프씨가 향후 6개월 후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할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한도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그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에프씨와 이 사건 기본약정을 체결하여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

출채권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대출한도를 125억 원으로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프씨가 2011년부터 이미 외상매출 채권을 결제할 수 없을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고의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러한 이에프씨의 행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외상매출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내지 과실로 이에프씨의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의 방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이에프씨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다대출행위로서 '약탈적 대출'의 일종이고, 약탈적 대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비대 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인 피고에게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청구 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국내법상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설령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게 설명의무를 지울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보증계약의 경우 주채무자가 1개 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한 때 금융기관의 보증인에 대한 사후적인 통지의무만을 지 우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금 융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자인 원고들에게 담보목적인 채권의 채무자인 이에프씨의 상 환능력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 사전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적 성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서,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에프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에프씨의 상 환능력을 실제에 비하여 과도하게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외상 매출채권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낮은 담보를 취득한 것이 되어 피고의 손실로 귀착될 뿐 피고가 이에프씨 내지 원고들에게 그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상환청구권 조항에 따른 계약상의 채권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어떠한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회사는 254,860,253원, 원고 B는 59,492,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반효림

판사 남관모

그림 1 안내문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口종의합니다)에 체크하셔야만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상매출체권의 당인은 고객님(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 위터 수취한 체권을 달보로 운행으로부터 대용을 받는 쓸위입니다.
- 할인신청하신 재권의 발형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이용약정한 기업으로,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약정한 구애기업의 발형재권을 발인하는 것은 함인 의회하신 고객님(판매기업)이 국민운행의 채무지가 되며, 고객님 앞으로 대출계하기 생성되어 만기상환 전까지는 고객님의 대출한책에 포함됩니다.

집 출하하거다

 내출권의 상환은 구매기업이 채권반기일에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매기업이 결제하고 않으면 약절에 따라 온행은 고객님(판매기업)에 대출금을 상환 청구하며,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신용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은 고객님(판매기업)에 적용됩니다.

☑ 등의합니다

 구매기업별 외상화율체권전자대를 약정서는 인터넷으로 약정하신 경우 화측의 [인터넷약정 > 약정서조회]메뉴에서 조형 및 플릭이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약정하신 경우 구매기업의 관리점에 약정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 위 내용에 대하여 등의합니다.



그림 1 전자 서명 작성

